

4. 글로컬봉사센터규정

제1조(명칭 및 소재) 본 기관은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글로컬봉사센터(이하“센터“라 한다)라 칭하고, 교목처 부속기관으로 교내에 둔다. (2016.4.25.신설)(2021.6.22.개정)(2022.12.6.개정)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소외계층에 대한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, 대학의 사회공헌을 위한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2011.7.1.자구수정)(2026.3.25. 개정)

제3조(사업) 센터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 (2022.12.6.자구수정)(2026.3.25.개정)

1. 사회봉사 중.장기 계획수립 수립 및 시행
2. 사회공헌활동 계획 수립 및 시행
3. 매년도 주요사업계획 심의
4. 사회봉사 및 사회 공헌활동 프로그램 개발
5. 사회봉사 교과목 관리
6. 대외기관 연계 업무 운영
7. 사회봉사 관련 간행물 발간
8. 사회봉사인증제 관리
9. 기타사업

제4조(구성) ① 센터장을 두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(2022.12.6.자구수정)(2026.3.25.자구수정)

②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(2022.12.6.자구수정)(2026.3.25.자구수정)

③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.(2022.12.6.자구수정)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“라 한다)를 둔다.(2022.12.6.자구수정)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회봉사 중.장기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
2. 매년도 주요사업 심의 및 수정에 관한 사항
3. 사회봉사 계획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4. 사회봉사의 효율적 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
5. 기타 사회봉사에 관한 사항

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,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(2026.3.25.자구수정)

④ 위원 중 교목처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, 추천직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. (2016.4.25.위원변경)

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한다. (2026.3.25.개정)

⑥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제6조(분과위원회) 센터 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(2022.12.6.자구수정)(2026.3.25.자구수정)

제7조(사회봉사교육과정의 운영) 사회봉사교육과정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매학기에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2.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 P, NP로 운영하며, 재학기간 중 2학기를 이수하여야 하며, 1학기 2시간 이상의 기본강의와 16시간 이상의 봉사 및 2시간 이상의 평가회로 한다.

(2008.3.1.단서조항삭제)(2022.12.6.개정)(2026.3.25.개정)

3. 사회봉사 평가는 출석상황, 실습기관의 확인서 및 결과 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.
4. 평가는 P, NP로 평가하는데, 기본 강의를 필하지 않은 경우, 사회봉사 시간에 미달한 경우, 사회봉사 태도 중 해당 봉사기관에서 평가한 A, B, C, F 중 “F”로 처리한 경우, 사회봉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NP로 처리한다.
5. 이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본 대학교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.

제8조(2016.4.25.삭제)

제9조(예·결산 및 사업보고)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,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.(2016.4.25. 신설)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9월 01일부터 적용한다.